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모의비행훈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7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7개월 연장하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산림복지단지 구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27.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2025년 1월 27일”을 “2027년 8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립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321”을 “319”로 하고, 일반직 계 “315”를 “31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04”를 “302”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1,036”을 “1,029”로 하고, 일반직 계 “1,036”을 “1,0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29”를 “1,022”으로 한다.

별표 4 중 “2025년 1월 27일”을 “2027년 8월 31일”로 하고, 총계 “5”를 “7”로, 일반직 계 “5”를 “7”로, 4급 이하 “5”를 “7”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별표 5

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청 소속기관의 정원 9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5년 1월 27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 ----- ----- <u>2027년 8월 31일</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국립산림생태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한시정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u><삭 제></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1</u>	<u>319</u>	-2
•	•	•	
•	•	•	
일반직 계	<u>315</u>	<u>313</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04</u>	<u>302</u>	-2
•	•	•	
•	•	•	

[별표 3]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36</u>	<u>1,029</u>	-7
일반직 계	<u>1,036</u>	<u>1,029</u>	-7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29</u>	<u>1,022</u>	-7
·	·	·	

[별표 4]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5</u>	<u>7</u>	+2
일반직 계	<u>5</u>	<u>7</u>	+2
4급 이하	<u>5</u>	<u>7</u>	+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6